개선사항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DGB유페이
2. 조치일 : 2017. 3. 17.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개인신용정보 관리규정 개정 필요

□ 고객의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규에 개인신용정보 누설시 대응 방법 및 파기 절차, 고객의 열람·동의 철회·삭제 요구시 처리방법,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기록·보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지급결제대행(PG)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신용정보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각 내규에서 개인신용정보 누설시 대응 방법, 접근권한 부여 기록의 보관기간 등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업무처리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 관련 내규를 통합하는 등 업무처리가 일관되도록 내규를 개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람

(2)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강화

□ OOO에 따라 내부직원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하고 부여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으나,

접근권한 등록・변경・말소이력을 서면으로만 처리하고 있을 뿐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관련 서류를 분실하거나 개인신용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적 및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임직원 퇴직에 따른 접근권한 회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퇴직직원 본인 또는 소속 부서에서 접근권한 회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계정 회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전자결제시스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임직원 퇴직시 접근권한 회수가 즉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점검표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 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